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교정직 공무원 13명(5급 9명, 6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교정직 공무원 3명(7급 3명)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제9호·제11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조의6제6항 중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한다.

제2조 중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를 “서기관 또는 검사로”로,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를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찰국에 검찰과·형사기획과·공공형사과·국제형사과”를 “형사사법국에 형사사법총괄과·형사기획과·공공형사과·국제형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을 “형사사법총괄과장·형사기획과장”으로,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과장”을 “형사사법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검찰행정”을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의”를 “공소청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운영”을 “검사사무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공공수사사건”을 “공공형사사건”으로,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사지휘”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도·조언 등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공공수사사건”을 “공공형사사건”으로,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공수사사건”을 “공공형사사건”으로,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

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공수사사건의 수사 지휘”를 “공공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 경찰관리 협의·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도·조언 등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공공수사사건”을 각각 “공공형사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7호 중 “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6항제1호 중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을 “검사사무·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를 “서기관 또는 검사로,”로,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부이사관·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를 “서기관

또는 형사범무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9조의3 중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14항제3호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6호 중 “그 밖의 정원 중 17명”을 “그 밖의 정원 중 21명”으로, “5급 2명 및 6급 2명”을 “5급 4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교정직 3명(7급 3명)”을 “교정직 13명(5급 9명, 6급 4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교도 6,058 다음에 “교도 또는 운전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261”을 “26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교도 6,058 다음에 “교도 또는 운전서기보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보 “261”을 “260”으로 한다.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784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747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7
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검사	12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4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4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8
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검사	26
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
교정관	19
보호사무관	10
형사법무사무관	20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0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8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10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교감	32
보호주사	12
형사법무주사	37
형사법무주사 또는 보호주사	2
형사법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출입국관리주사	37
행정주사	4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형사법무주사	25
행정주사·형사법무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형사법무주사 또는 교감	30
행정주사·형사법무주사 또는 보호주사	3
행정주사·형사법무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형사법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직업상담주사	1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교감 또는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형사법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8
보호주사보	11
형사법무주사보	12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1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교위	10
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 교위 · 보호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 · 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3
전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3
행정서기 또는 형사법무서기	21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보호서기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3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
행정서기보 또는 형사법무서기보	15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3
운전서기보	10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8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4
경정	1
경감	1
경위	1
경사	1
검사 계	27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0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84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747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7
서기관	20
서기관 또는 검사	12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5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4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8
서기관·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검사	26
서기관·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 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교정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
교정관	22
보호사무관	14
형사법무사무관	20
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2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행정사무관·보호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8
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8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10
기록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	1
교감	32
보호주사	12
형사법무주사	37
형사법무주사 또는 보호주사	2
형사법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출입국관리주사	35
행정주사	4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형사법무주사	25
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또는 교감	30
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또는 보호주사	3
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교감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직업상담주사	1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2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교감 또는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형사법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4
보호주사보	8
형사법무주사보	12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형사법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1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 또는 교위	10
행정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교위·보호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형사법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4
전산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1
방송통신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3
행정서기 또는 형사법무서기	21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3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
행정서기보 또는 형사법무서기보	15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3
운전서기보	10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8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경찰공무원 계	4
경정	1
경감	1
경위	1
경사	1
검사 계	27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0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u>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u>	
총계	145
일반직 계	12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3
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형사법무사무관	1
형사법무사무관(교수)	5
교정관	1
교정관(교수)	5
보호사무관(교수)	2
출입국관리사무관(교수)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또는 형사법무주사	5
형사법무주사	5
교감	10
공업주사	1
임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2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교위	1
형사법무주사보	4
교위	1
보호주사보	2
전산주사보	3

출입국관리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공업주사보	2
식품위생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방호주사보	1
형사법무서기	8
교사	10
간호서기	1
방송통신서기	1
행정서기 또는 형사법무서기	3
보호서기	1
행정서기보 또는 교도	2
방송통신서기보	1
운전서기보	3
방호서기보	3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
검사 계	25
검사	14
검사(교수)	11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u>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무원 정원표</u> (제33조제4항 관련)	
총계	12
일반직 계	12
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행정사무관·형사법무사무관 또는 검사	3
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형사법무주사	2
행정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	2
전산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대변인) ① (생략)	제1조의2(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u>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u>서기관</u> ----- -----.
③ (생략)	③ (생략)
제1조의3(감찰관) ① · ② (생략)	제1조의3(감찰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감찰담당관은 <u>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u> 또는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u>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③----- <u>부이사관 · 서기관</u> ----- ----- ----- <u>부이사관 또는 서기관</u> ----- -----.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④-----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진정 ·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u>검찰청</u>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 소추 ·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2. ----- -(<u>공소청</u> ----- ----- -----)
3. 법무부 및 <u>검찰청</u> 에 대한 감사(<u>검찰청</u> 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3. ----- <u>공소청</u> ----- -(<u>공소청</u> -----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
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6. (생략)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
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
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생략)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
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
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0. (생략)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
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
시한 사항의 처리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
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
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
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
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

4. -----
공소청-----

5.·6. (현행과 같음)

7. -----
-----(공소청 -----
-----)

8. (현행과 같음)

9. ----- 공소청-----

10. (현행과 같음)

11. ----- 공
소청-----

⑤-----
-----.

1. -----(공소청--
-----)-

2. -----
----(공소청-----)-

3. -----(공소청--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 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⑥ 기획재정담당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검사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은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⑦ ~ ⑫ (생략)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

4. -----

---(공소청-----)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으로, 시설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2조(운영지원과)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로 보한다.

제5조(법무실) ① ~ ⑤ (생략)

⑥ 법무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소송과장·행정소송과장·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⑦ ~ ⑭ (생략)

제6조(검찰국) ① 검찰국에 검찰과·형사기획과·공공형사과·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②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 및 공공형사과장은 검사로, 국제형사과장 및 형사법제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③ 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

제5조(법무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서기관 또는 검사로-----
----- 부이사관·서기관-----

-----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6조(형사사법국) ① 형사사법국에 형사사법총괄과·형사기획과·공공형사과·국제형사과-----.

② 형사사법총괄과장·형사기획과장-----
-----부이사관·서기관-----
-----.

③ 형사사법총괄과장-----.

1.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수립 및 시행

2. 검찰행정(인사·조직등) 관계법령의 입안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 관리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7. 검찰운영의 개선
8. (생략)
- ④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형사사건[공안,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관련 사건(이하 “공공수사사건”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검찰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생략)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

-
2. 검사사무 행정-----
 -
 3. 공소청 공무원-----
 -
 4. 공소청의-----
 5. 검사사무 관련 예산-----
 -
 6. 공소청사 -----
 -
 7. 검사사무 운영-----
 8. (현행과 같음)
 - ④-----
 - .
 1. -----
 -
 - “공공형사사건”-----
 - 검사사무 -----
 2. ----- 검사사무 -----
 -
 3. (현행과 같음)
 4. -----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

5. ~ 16. (생략) ⑤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공공수사사건</u> 관련 <u>검찰업무</u>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u>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u> 보고 및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u>공공수사사건의 검찰사무</u> 보고에 관한 사항 6. <u>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휘</u> 7. <u>공공수사사건의</u>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8. <u>공공수사사건의</u>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 14. (생략) ⑥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u>찰관리 협의·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도·조언 등에 관한 지휘·감독</u> 5. ~ 16. (현행과 같음) ⑤----- -----. 1. <u>공공형사사건</u> ---- <u>검사사무</u> ----- 2. 3. (현행과 같음) 4. <u>공공형사사건</u>- <u>검사사무</u> --- ----- [삭제] 6. <u>공공형사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사법경찰관리 협의·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도·조언 등에 관한 지휘·감독</u> 7. <u>공공형사사건</u>----- ----- 8. <u>공공형사사건</u>----- ----- 9. ~ 14. (현행과 같음) ⑥----- -----. 1. ~ 5. (현행과 같음)
--	---

6. 국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8. ~ 10. (생략) ⑦ 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7조의2(인권국) ①·② (생략)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⑤ (생략)	6.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감독 7. -----관련 검사사무의 지 휘·감독 8. ~ 10.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검사사무-- ----- --- 3.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인권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 장은 부이사관·서기관 ----- ----- 서 기관 -----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 사관·서기관 ----- -----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

⑥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⑦ ~ ⑧ (생략)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② (생략)

③ 국제법무정책과장 및 국제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 ⑥ (생략)

제10조(총무과) ① (생략)

②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제11조(기획부) ① (생략)

②기획과장은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⑥-----
-----.

1. 검사사무·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 제도 개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2. ~ 3.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기관 또는 검사로, -----
----- 부이사관·서기관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총무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서기관-----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기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 ② (생략)

③ 운영지원과장은 검찰수사서
기관 또는 검찰사무관으로, 법
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
로 보한다.

④ · ⑤ (생략)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서기
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로 보한다.

제27조(출입국 · 외국인청 등) ①

~ ⑬ (생략)

⑭ 심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김해
공항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의
심사지원과장은 제5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에 따른 관리과장
의 분장사항과 제9항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심사과장의 분장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 2. (생략)

3. 수사기관에 대한 출입국 관
련 정보 제공

4. ~ 7. (생략)

⑮ ~ ⑳ (생략)

제13조의2(법무연수원 용인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서기관

-----.

제27조(출입국 · 외국인청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
-----.

-----.

1. · 2. (현행과 같음)

3. 검사 또는 수사기관-----

4. ~ 7. (현행과 같음)

⑮ ~ ㉓ (현행과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 15. (생략) 16. <u>그 밖의 정원 중 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8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및 6급 2명)</u> ③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략) ⑩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u>교정직 3명(7급 3명), 의무직 117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59명, 4급 또는 5급 30명, 5급 24명), 전문경력관 나 군(직업훈련 담당) 17명</u> 3. ~ 6. (생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15. (현행과 같음) 2. <u>그 밖의 정원 중 21명</u>----- ----- -----<u>5급 4명 및 6급 4명</u>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1. (현행과 같음) 2. ----- -----<u>교정직 13명(5급 9명, 6급 4명),</u>----- ----- ----- 3. ~ 6. (현행과 같음)
---	--

신 · 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4</u>	<u>8</u>	+4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사	<u>1</u>	<u>7</u>	+6
<u>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 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u>	<u>4</u>	<u><삭 제></u>	-4
<u>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 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u>	<u>6</u>	<u><삭 제></u>	-6
서기관	<u>18</u>	<u>20</u>	+2
서기관 또는 검사	<u>3</u>	<u>12</u>	+9
<u>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u>	<u>2</u>	<u><삭 제></u>	-2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u>	<u>9</u>	<u><삭 제></u>	-9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u> <u>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u>	<u>1</u>	<u><삭 제></u>	-1
·	·	·	
·	·	·	
<u>서기관</u> 또는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5</u>	+5
<u>검찰수사서기관</u> 또는 <u>검찰사무관</u>	<u>5</u>	<u><삭 제></u>	-5
·	·	·	
·	·	·	
<u>서기관 · 행정사무관</u> 또는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8</u>	+8
<u>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u> <u>사무관 또는 검사</u>	<u><신 설></u>	<u>26</u>	+26
<u>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u> <u>사무관 또는 교정관</u>	<u><신 설></u>	<u>7</u>	+7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u>	<u>8</u>	<u><삭 제></u>	-8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u>	<u>26</u>	<u><삭 제></u>	-26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u> ·	<u>7</u> ·	<u><삭 제></u> ·	-7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과학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u> · ·	<u>1</u> · ·	<u><삭 제></u> · ·	-1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20</u>	+20
<u>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u>	<u><신 설></u>	<u>2</u>	+2
<u>검찰사무관</u>	<u>20</u>	<u><삭 제></u>	-20
<u>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u> · ·	<u>2</u> · ·	<u><삭 제></u> · ·	-2

<u>행정사무관</u> 또는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28</u>	+28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u> <u>또는 보호사무관</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u> 또는 <u>검찰사무관</u>	<u>28</u>	<u><삭 제></u>	-28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보호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u> <u>또는 교정관</u>	<u><신 설></u>	<u>21</u>	+21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 ·</u> <u>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u>	<u><신 설></u>	<u>1</u>	+1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u> <u>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교정관</u>	<u>21</u>	<u><삭 제></u>	-21
<u>행 정 사 무 관 · 검 찰 사 무 관 · 시 설</u> <u>사무관 또는 교정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u>	<u>1</u>	<u><삭 제></u>	-1
·	·	·	
·	·	·	
<u>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37</u>	+37
<u>형사법무주사</u> 또는 <u>보호주사</u>	<u><신 설></u>	<u>2</u>	+2
<u>형사법무주사</u> 또는 <u>전산주사</u>	<u><신 설></u>	<u>1</u>	+1
<u>검찰주사</u>	<u>37</u>	<u><삭 제></u>	-37
<u>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u>	<u>2</u>	<u><삭 제></u>	-2
<u>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u>행정주사</u> 또는 <u>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25</u>	+25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 공업</u> <u>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교감</u>	<u><신 설></u>	<u>30</u>	+30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보호주사</u>	<u><신 설></u>	<u>3</u>	+3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전산주사</u>	<u><신 설></u>	<u>4</u>	+4
<u>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u>	<u>25</u>	<u><삭 제></u>	-25
<u>행정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교감</u>	<u>30</u>	<u><삭 제></u>	-30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보호주사</u>	<u>3</u>	<u><삭 제></u>	-3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전산주사</u>	<u>4</u>	<u><삭 제></u>	-4
.	.	.	
.	.	.	
<u>전산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통계주사</u>	<u><신 설></u>	<u>1</u>	+1
<u>전산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통계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12</u>	+12
<u>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신 설></u>	<u>1</u>	+1
<u>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u>검찰주사보</u>	<u>12</u>	<u><삭 제></u>	-12
<u>검찰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1</u>	<u><삭 제></u>	-1
<u>검찰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u>행정주사보</u> 또는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15</u>	+15
<u>행정주사보</u> 또는 <u>검찰주사보</u>	<u>15</u>	<u><삭 제></u>	-15
·	·	·	
<u>행 정 주 사 보 · 형 사 법 무 주 사 보</u> <u>또는 교위</u>	<u><신 설></u>	<u>10</u>	+10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 교위 · 보호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신 설></u>	<u>3</u>	+3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또는 <u>교위</u>	<u>10</u>	<u><삭 제></u>	-10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 교위</u> <u>· 보호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3</u>	<u><삭 제></u>	-3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u>또는 전산주사보</u> .	<u>2</u> .	<u><삭 제></u> .	-2
.	.	.	
<u>전산주사보</u> <u>또는</u>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1</u>	+1
<u>전산주사보</u> <u>또는</u> <u>검찰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u>행정서기</u> <u>또는</u> <u>형사법무서기</u>	<u><신 설></u>	<u>21</u>	+21
<u>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u>	<u>21</u>	<u><삭 제></u>	-21
.	.	.	
.	.	.	
<u>행정서기보</u> <u>또는</u> <u>형사법무서기보</u>	<u><신 설></u>	<u>15</u>	+15
<u>행정서기보</u> <u>또는</u> <u>검찰서기보</u>	<u>15</u>	<u><삭 제></u>	-15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u>4</u>	<u>8</u>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u>1</u>	<u>7</u>	+6
<u>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 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u>	<u>4</u>	<u><삭 제></u>	-4
<u>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 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u>	<u>6</u>	<u><삭 제></u>	-6
서기관	<u>18</u>	<u>20</u>	+2
서기관 또는 검사	<u>3</u>	<u>12</u>	+9
<u>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u>	<u>2</u>	<u><삭 제></u>	-2
<u>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u>	<u>9</u>	<u><삭 제></u>	-9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u> <u>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u>	<u>1</u>	<u><삭 제></u>	-1
·	·	·	
·	·	·	
<u>서기관</u> 또는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5</u>	+5
<u>검찰수사서기관</u> 또는 <u>검찰사무관</u>	<u>5</u>	<u><삭 제></u>	-5
·	·	·	
·	·	·	
<u>서기관 · 행정사무관</u> 또는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8</u>	+8
<u>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u> <u>사무관 또는 검사</u>	<u><신 설></u>	<u>26</u>	+26
<u>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u> <u>사무관 또는 교정관</u>	<u><신 설></u>	<u>7</u>	+7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u>	<u>8</u>	<u><삭 제></u>	-8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u> <u>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u>	<u>26</u>	<u><삭 제></u>	-26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u> ·	<u>7</u> ·	<u><삭 제></u> ·	-7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과학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u> · ·	<u>1</u> · ·	<u><삭 제></u> · ·	-1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20</u>	+20
<u>형사법무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u>	<u><신 설></u>	<u>2</u>	+2
<u>검찰사무관</u>	<u>20</u>	<u><삭 제></u>	-20
<u>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u> · ·	<u>2</u> · ·	<u><삭 제></u> · ·	-2

<u>행정사무관</u> 또는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28</u>	+28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u> <u>또는 보호사무관</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u> 또는 <u>검찰사무관</u>	<u>28</u>	<u><삭 제></u>	-28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보호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u> <u>또는 교정관</u>	<u><신 설></u>	<u>21</u>	+21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 ·</u> <u>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u>	<u><신 설></u>	<u>1</u>	+1
<u>행 정 사 무 관 · 형 사 법 무 사 무 관</u> <u>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교정관</u>	<u>21</u>	<u><삭 제></u>	-21
<u>행 정 사 무 관 · 검 찰 사 무 관 · 시 설</u> <u>사무관 또는 교정관</u>	<u>1</u>	<u><삭 제></u>	-1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u>	<u>1</u>	<u><삭 제></u>	-1
·	·	·	
·	·	·	
<u>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37</u>	+37
<u>형사법무주사</u> 또는 <u>보호주사</u>	<u><신 설></u>	<u>2</u>	+2
<u>형사법무주사</u> 또는 <u>전산주사</u>	<u><신 설></u>	<u>1</u>	+1
<u>검찰주사</u>	<u>37</u>	<u><삭 제></u>	-37
<u>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u>	<u>2</u>	<u><삭 제></u>	-2
<u>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u>행정주사</u> 또는 <u>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25</u>	+25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 · 공업</u> <u>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교감</u>	<u><신 설></u>	<u>30</u>	+30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보호주사</u>	<u><신 설></u>	<u>3</u>	+3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전산주사</u>	<u><신 설></u>	<u>4</u>	+4
<u>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u>	<u>25</u>	<u><삭 제></u>	-25
<u>행정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u> <u>또는 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교감</u>	<u>30</u>	<u><삭 제></u>	-30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보호주사</u>	<u>3</u>	<u><삭 제></u>	-3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시설주사</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전산주사</u>	<u>4</u>	<u><삭 제></u>	-4
.	.	.	
.	.	.	
<u>전산주사 · 형사법무주사</u> <u>또는 통계주사</u>	<u><신 설></u>	<u>1</u>	+1
<u>전산주사 · 검찰주사 또는</u> <u>통계주사</u>	<u>1</u>	<u><삭 제></u>	-1
.	.	.	

·	·	·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12</u>	+12
<u>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신 설></u>	<u>1</u>	+1
<u>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신 설></u>	<u>1</u>	+1
<u>검찰주사보</u>	<u>12</u>	<u><삭 제></u>	-12
<u>검찰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1</u>	<u><삭 제></u>	-1
<u>검찰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u>행정주사보</u> 또는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15</u>	+15
<u>행정주사보</u> 또는 <u>검찰주사보</u>	<u>15</u>	<u><삭 제></u>	-15
·	·	·	
<u>행 정 주 사 보 · 형 사 법 무 주 사 보</u> <u>또는 교위</u>	<u><신 설></u>	<u>10</u>	+10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 · 교위 · 보호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신 설></u>	<u>3</u>	+3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 · 형사법무주사보</u> 또는 <u>전산주사보</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또는 <u>교위</u>	<u>10</u>	<u><삭 제></u>	-10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 교위</u> <u>· 보호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또는 <u>보호주사보</u>	<u>3</u>	<u><삭 제></u>	-3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또는 <u>출입국관리주사보</u>	<u>1</u>	<u><삭 제></u>	-1

<u>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u> <u>또는 전산주사보</u> .	<u>2</u>	<u><삭 제></u>	-2
.	.	.	
.	.	.	
<u>전산주사보</u> 또는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1</u>	+1
<u>전산주사보</u> 또는 <u>검찰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u>행정서기</u> 또는 <u>형사법무서기</u>	<u><신 설></u>	<u>21</u>	+21
<u>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u>	<u>21</u>	<u><삭 제></u>	-21
.	.	.	
.	.	.	
<u>행정서기보</u> 또는 <u>형사법무서기보</u>	<u><신 설></u>	<u>15</u>	+15
<u>행정서기보</u> 또는 <u>검찰서기보</u>	<u>15</u>	<u><삭 제></u>	-15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법무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서기관</u> 또는	<u>2</u>	<u><삭 제></u>	-2
<u>검찰수사서기관</u>			
서기관	<u>2</u>	<u>4</u>	+2
<u>서기관</u> 또는	<u><신 설></u>	<u>1</u>	+1
<u>형사법무사무관</u>			
<u>검찰수사서기관</u> 또는	<u>1</u>	<u><삭 제></u>	-1
<u>검찰사무관</u>			
·	·	·	
<u>행정사무관</u> 또는	<u><신 설></u>	<u>3</u>	+3
<u>형사법무사무관</u>			
<u>행정사무관 · 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1</u>	+1
<u>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u>			
<u>행정사무관</u> 또는	<u>3</u>	<u><삭 제></u>	-3
<u>검찰사무관</u>			
<u>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u>	<u>1</u>	<u><삭 제></u>	-1
<u>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u>			
·	·	·	

<u>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1</u>	+1
<u>형사법무사무관(교수)</u>	<u><신 설></u>	<u>5</u>	+5
<u>검찰사무관</u>	<u>1</u>	<u><삭 제></u>	-1
<u>검찰사무관(교수)</u>	<u>5</u>	<u><삭 제></u>	-5
.	.	.	
.	.	.	
<u>행정주사</u> 또는 <u>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5</u>	+5
<u>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5</u>	+5
<u>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u>	<u>5</u>	<u><삭 제></u>	-5
<u>검찰주사</u>	<u>5</u>	<u><삭 제></u>	-5
.	.	.	
.	.	.	
<u>행정주사보</u> 또는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보</u> 또는 <u>검찰주사보</u>	<u>2</u>	<u><삭 제></u>	-2
.	.	.	
<u>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4</u>	+4
<u>검찰주사보</u>	<u>4</u>	<u><삭 제></u>	-4
.	.	.	
.	.	.	

<u>형사법무서기</u>	<u><신 설></u>	<u>8</u>	+8
<u>검찰서기</u>	<u>8</u>	<u><삭 제></u>	-8
•	•	•	
•	•	•	
<u>행정서기</u> 또는 <u>형사법무서기</u>	<u><신 설></u>	<u>3</u>	+3
<u>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u>	<u>3</u>	<u><삭 제></u>	-3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교도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운전서기보	<u>261</u>	<u>260</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교도 또는 운전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운전서기보	<u>261</u>	<u>260</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 또는 검사</u>	· · <u><신 설></u>	· · <u>1</u>	+1
<u>서기관 · 행정사무관 · 형사법무 사무관 또는 검사</u>	<u><신 설></u>	<u>3</u>	+3
<u>행정사무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 또는 형사법무주사</u>	<u><신 설></u>	<u>2</u>	+2
<u>행정주사보 또는 형사법무주사보</u>	<u><신 설></u>	<u>2</u>	+2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u>	<u>3</u>	<u><삭 제></u>	-3
<u>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u>	<u>2</u>	<u><삭 제></u>	-2

<u>행정주사보</u> 또는 <u>검찰주사보</u>	<u>2</u>	<u><삭 제></u>	-2
•	•	•	
•	•	•	